

의안번호	2205807
의 퇴 인	조경태 의원
회 답 일	2024.12.3.
추계번호	24B5321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의8 (연령차별의 시정신청)	피해자는 「노동위원회법」에 따른 노동위원회(이하 “노동위원회”라 한다)에 연령차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. 다만, 연령차별을 받은 날(연령차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)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제1항)	재량규정
		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연령차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,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노동위원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(이하 “중앙노동위원회”라 한다)가 따로 정하여 고시함(제3항)	
		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, 시정절차 및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효력 등에 관하여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준용하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함(제4항)	
2	안 제24조(과태료)	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제4조의8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제1항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제2항) 1.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조의8(연령차별의 시정신청)	×	• 미첨부 –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– 본문참조
2	안 제24조(과태료)	—	• 미대상 –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이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
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령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으로 인해 노동위원회의 인건비 및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장래에 발생할 시정 신청물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어려움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노동위원회의 시정 신청 수와 심리로 인한 행정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소요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580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
- ☐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Ⅳ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